

충청북도장한여성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1
----------	-----

제출년월일 : 1993.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충청북도 장한여성대상의 수상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심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 현실과 부합치 않는 수상자 결정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함.

□ 주요골자

- 수상부문중 장한여인부문의 3개 분야를 2개분야로 하고 장한아내부문을 추가
- 수상자 결정방법에 있어 각 부문별로 심사위원회의 복수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각 부문별로 1명씩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심사위원회의 예심을 거쳐 전체심사위원회의 심사후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개정

□ 첨 부

1. 충청북도장한여성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충청북도장한여성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장한여성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한아내 부문.

제7조제1항중 "각부문별로 심사위원회로부터 복수추천을 받아"를 "각부문별
심사위원회의 예심을 거쳐 전체심사위원회의 심사후"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3호의"를 "제4호의"로하고 "심사위원회의 복수추천을 받아 3명이내의"
를 "2명이내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